#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87

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정준호·임호선·김태선

서영교 • 이춘석 • 민홍철

이기헌 • 진선미 • 이학영

안태준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,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도심 '캠퍼스타운'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 대구, 세종시 등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있음.

현행법에는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, 민간(지역주민, 청년)의 협력을 통해 노후 도심의 재생을 촉진하고, 창업 기회 부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대학이 지식, 문화,경제의 중심으로서 도시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하고,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항제6호의2, 제13조제4항제4호 신설, 제56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###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6호의2 중 "행정"을 "행정·교육"으로 한다.

제13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주변 지역

제56조제1항제1호 중 "행정"을 "행정 • 교육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		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6의2. "도시재생혁신지구"(이하	6의2		
"혁신지구"라 한다)란 도시재			
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			
·상업·주거·복지· <u>행정</u>	<u>행정</u>		
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	<u>• 피육</u>		
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			
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			
따라 지정 · 고시되는 지구를			
말한다.			
6의3. ~ 12. (생 략)	6의3. ~ 12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13조(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)	제13조(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)		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	<b>4</b>		
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			
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			
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			
상을 갖추어야 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4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		
	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		

#### ⑤ (생략)

제56조(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)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,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 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(도시재생활성화지 역을 포함한다)을 전략계획수 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 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- 1.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기본 계획에 따라 산업·상업·주 거·복지·<u>행정</u>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
- 2. ~ 4. (생 략)
- ② ~ ⑦ (생 략)

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주
변 지역
⑤ (현행과 같음)
제56조(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)
①
1
1.
<u>행정·교육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혀해과 간은)